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5월 01일, 전수일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05월 07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5월 0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전수일 의원)

가. 제안이유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자 자격 (안 제3~4조)
- 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해 군수의 위임사항으로 규정 (안 제5조)
-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안 제6~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대상자 자격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절차를 군수의 위임사항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인 사업신청과정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자 교육·컨설팅사업, 안전·서비스관련
환경개선사업 3가지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
군수가 정하는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보조받는 것이며,

- 입법례로는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있고(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원주시, 화천군, 횡성군)
이 중 원주시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은 농촌민박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농촌 관광활성화
도모취지와 함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지원으로
민박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 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성 명			민박명		
	주 소					
2. 사업계획	사업장소				대지면적	m ²
	건축물규모	<input type="checkbox"/> 1층 <input type="checkbox"/> 2층 <input type="checkbox"/> 지하				
	공사규모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주택연면적	m ²	전체방수 (면적)	개 (m ²)	객실수 (면적)	개 (m ²)
	건축자재	외 벽	<input type="checkbox"/> 조적 <input type="checkbox"/> 콘크리트 <input type="checkbox"/> 철골구조			
		지 붕	<input type="checkbox"/> 평지붕 <input type="checkbox"/> 경사지붕			
기 타						
3. 설계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영 <input type="checkbox"/> 설계사무소					
4. 시공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영 <input type="checkbox"/> 전문건설업체(자)					
5. 사업 추진일정	허가·신고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6. 투자 계획서	사 업 별	소요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비 고	
	합 계					
	공사비	재료비				
		인건비				
	설 계 비 (전액 자부담)					
기 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

1. 숙박시설 소개

객실	온돌방 : 평형 실, 침대방 : 평형 실
내부시설	냉장고, TV, 서랍장, 에어컨, 화장실, 빨래걸이 등
취사시설	싱크대,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기타 취사도구 등
기타시설	
주차장	

2. 운영계획

- 예약 시, 이용 전 온라인 계좌로 숙박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
- 입실은 () 시 이후부터, 퇴실은 () 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음주 및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합니다.
- 퇴실 시 키를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숙박요금 안내

이용시기	가격	비고
주중(일 ~ 목)	원	인 실기준 등
주말(금, 토)	원	
성수기 및 연휴	원	

4. 환불안내

-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2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준수

5. 주변여행지 소개

○

6. 예약문의

- 전화 :
- 휴대폰 :

